‘이판사판야단법석’ 다음(Daum) 카페 현황 보고

2015. 2. 기획조정실

1. 검토 배경

▣ **판사들이 회원인 인터넷 포털사이트 커뮤니티 등장**

- 다음(Daum) 포털사이트에 판사들이 회원인 ‘이판사판야단법석’ 카페 개설
- 여러 판사들이 회원 가입하여 **익명**으로 **사법부 관련 현안, 법관인사, 특정 판결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의견 개진**
-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거나 지나치게 직설적인 표현 등 **부적절한 게시글 존재**

▣ **‘이판사판야단법석’ 카페 활동 현황 파악 ⇨ 대처 방안 강구**

- 카페 개설 경위, 현재 활동 수준, 게시 글 내용 등 분석
- 적절한 대응 방안 수립

2. 카페 현황

가. 개요

▣ **카페 개설**

- [개설일] 2014. 10. 24.
- [개설 경위] ‘여성 판사 네이버 카페’의 **회원**이었던 몇몇 **여성 판사**들이 **익명**에 의한 사이버공간에서의 **소통** 등을 **목적**으로 **카페 개설**

∴ 네이버 카페에는 익명에 의한 글 게시 기능 부존재

☑ **'여성 판사 네이버 카페'에 게시된 '이판사판 야단법석' 다음 카페 개설 안내글 일부**

▸"용기와 체념의 양자택일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정리되지 않은 생각도 말하고 듣고, 고쳐말하고, 또 그것을 재판에 녹여내고 공유할 수 있는 일상적이고 부담없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가능케하는 조건은 아마도 **비공개성**과 **익명성**, 그리고 **신뢰**일 것입니다", "그래서 법관이라면 남녀를 불문하고 누구나 가입하여 **익명으로** 아주 시시껄렁한 **일상의 애환**부터 정의(특히 회복적 정의를 중심으로)와 **재판, 사법에 대한 담론**들도 부담없이 **소통하고자 하는 카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카페명은 '이판사판야단법석'입니다.** 네이버에는 익명게시판 기능이 없어서 다음에 만들었는데 댓글에 한메일 메일주소를 알려주시면 초대장을 보내겠습니다."

▣ 카페 운영자

● 최초 **카페 개설자**는 창원지법 홍○○ 판사(여, ○○. ○. ○○.생, 연수원 35기, 2. 23.자로 ○○지법 전보 예정)로 추측

● 현재 홍 판사 포함하여 **7명**의 **운영자**가 카페 관리

- 운영자들이 신규 회원 가입 승인, 부적절한 게시글 삭제 등 권한 행사

▣ 회원 현황

● 회원 수 2015. 2. 현재 384명

- 카페 개설 당시 **초기 회원 40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
- **여성 판사**가 **다수**일 것으로 예측되나, 게시글 내용 등에 비추어 남성 판사 회원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임
- 대부분 **평판사**로 구성, 다만 극소수의 부장판사도 가입되어 있을 가능성 완전 배제할 수 없음
- 회원 중 **퇴직자**는 운영자들이 **강제**로 카페에서 **탈퇴**시킴

● 회원 가입 절차

- '이판사판야단법석' 카페 회원초대요청 게시판에 회원초대요청 댓글 게

시(이때 연락 가능한 이메일 주소 기재)

- 운영자가 위 이메일 주소로 연수원 기수와 이름을 질문하여 법관 여부 확인 후 회원 가입시킴
- 회원 가입 후 1주일 내 운영자가 신규 회원 법관 코트넷 메일을 통해 회원 가입 여부 확인

▣ 카페에서의 의사 소통

- [업무 Q&A], [인사연수정보], [정의의 플랫폼], [세상 보기], [잡수다게시판], [책창고], [도와주세요], [운영게시판] 등 7~8가지 게시판으로 구성
- 각 게시판에 **1인이 글을 게시**하면, 그에 대하여 **다른 회원들이 댓글을 다는 방식**으로 의사 소통 및 정보 공유
- **모든 게시글과 댓글은 익명으로 게시**하여, **운영자들도** 특정 글 **게시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없음**
- 회원인 법관들 사이의 의사소통공간임을 명시하고, **게시글 등 내용의 외부 유출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
- 주요 게시판 개요
  - **[업무 Q&A 게시판]** ⇨ 판결문 작성 방법, 증인신문방식, 주요 대법원 판례 등 **업무 관련 정보 공유**
  - **[인사연수정보 게시판]** ⇨ **인사발령, 해외연수**에 관한 **의견 등 피력**
  - **[정의의 플랫폼 게시판]** ⇨ 상고법원 설치, 대법관 임명제청 등 **사법부 관련 최근 이슈**에 관한 **의견 제시**
  - **[세상보기 게시판]** ⇨ 어린이집 폭행 사건, 도둑뇌사 사건, 통합진보당 해산 등 **최근 사회적 이슈**에 관한 **의견 제시**

나. 문제의 소지 있는 주요 게시 글 및 댓글

▣ 상고법원 설치 관련

☑ **'상고법원안의 미래' (2015. 2. 2.자 게시글)**

[게시글 일부]

"상고심 개편, 넘어야 할 산은?... 몇가지가 있다... 먼저, 3심제 아래에서 **3심을 대법원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관념**과 **국민들의 인식**은 그 자체로 **헌법규범으로 승인되었다**고 볼 가능성이 없지 않다. 만일 **법이 통과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전격적으로 위헌 결정이라도 하게 되면**,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와 관계에서 완패**하게 될 뿐만 아니라 사실상 '대법관 증원 후 재판소원 허용'이라는 **대법원 수뇌부가 가장 우려하는 결과를 발생시키는 도화선**이 될 가능성도 있다... 다음으로, **'하급심 강화'라는 양승태 코트의 목표와도 배치**될 우려가 있다. 상고심에서의 파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급심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상고심에서의 파기가 없다면, 외부적으로 굳이 상고법원을 왜 만들었냐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사실상 준대법관으로 기능**할 가능성도 없지 않고, **대법관들 역시 이들의 존재 자체를 탐탁치 않게 여길 우려**도 있다... 새로운 제도가 생기기 위해서는 간단히 다수를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분명해야 한다. 이해하기 어렵고 일견 '뭐지?'라고 생각이 드는 제도는 도입하기 어렵다.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라고 물었을 때 선뜻 답이 망설여진다면, 그 제도 역시 도입이 어렵다.... **상고법원은 어떤 제도인가? 우리 스스로가 답을 해야 할 차례이다."**

[댓글 19개] ⇨ 대부분 게시글 내용에 공감한다는 취지

☑ **'상고법원안 다시보기2' (2014. 12. 3.자 게시글)**

[게시글 일부]

"상고법원안의 우려 지점... 상고법원안의 대표발의자는 판사 출신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으로 소위 '친정'의 입장에서는 고마운 일이다. 다소 우려스럽거나 걱정되는 점은 **대표발의자의 친동생**이 현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민감한 시기에 특히 **중요한 인사대상자의 친형이 대법원의 숙원사업에 관한 법률안의 대표발의자라는 점은 걱정되는 지점이 없지 않다**... 상고법원이 만들어지고 나면, 제도의 특성상 그곳은 '준대법원'으로 기능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 **소속 판사들은 대법관에 준하는 지위와 대우를 획득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판결을 통해 자신의 위상을 드러내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시도를 재판연구관들로 견제 및 통제할 수 있다는 발상은 법원의 생리와 재판부 독립의 원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어불성설이다. 따라서 **상고법원은 자칫 잘못하면 또 하나의 대법원이 되어 더 큰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

이 있다.“
[댓글 4개] ⇨ 대부분 게시글 내용에 공감한다는 취지

▣ 원세훈 형사사건 선고 관련

☑ ‘원세훈 항소심 선고’ (2015. 2. 9.자 게시글)
[게시글 일부]
“2시간 동안 판결을 읽고 계신 듯 한데, 그러면 결국 실형인가요? 지금까지 나온 속보 문구를 종합하면, 집행유예 선고하기엔 너무 이상한데…”
[댓글 22개] ⇨ 대부분 실형 선고에 찬성한다는 취지
“**징역 3년 법정구속, 속이 시~원한다!!**”
“**간만에 속이 확 풀리는 소식이네요**”
“**김○○ 부장님도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 판사답다…**”

▣ 박○○ 대법관 후보자 임명 제청 관련

☑ ‘대법관 임명제청되신 분에 대해 기사가 났군요’ (2015. 2. 3.자 게시글)
[게시글 일부]
“이런 정도인 줄은 몰랐네요, 여러모로 가슴이 답답한 하루입니다”
[댓글 13개] ⇨ 대부분 대법관 임명에 부정적인 의사표시
“**낙마에 한표요**”
“이분이 대법관이 되신다면 같은 법관이라는 것이 부끄러워질 것 같아요”
“**전임과 후임이…**”

▣ 쌍용차 해고노동자 판결 선고 관련

☑ ‘쌍용 해고노동자들을 생각하며’ (2014. 11. 13.자 게시글)
[게시글 일부]
“저 역시 한명의 노동자로서, 노동 3권이 이리도 허망한 문구에 불과함을 새삼 확인한 하루인지라 오늘이 더더욱 춥습니다… **할 말이 많지만 더 할 수가 없는 건 강요된 침묵이 이미 익숙해졌기 때문일까요**”
[댓글 14개] ⇨ 대부분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는 의견
“법이란게 원래 차가운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법을 운용하는 방식이 차가운 걸까요? **법조인으로서 이런 결말을 피해갈 길이 확실히 있긴 했던 걸까**

요?"

▣ 법원인사 관련

☑ '판사임용과정에서의 불투명성 납득하지 못하는 시스템' (2014. 12. 20.자 게시글)

[게시글 일부]

"법조계가 증오와 적대감이 가득한 곳이 되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생존 문제, 매년 쏟아지는 변호사 문제, **판검사 임용 과정에서의 불투명성, 불합격자가 납득하지 못하는 시스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법조계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법조인들이 서로가 서로를 향해 증오와 적대감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댓글 9개] ⇨ 대부분 법관임용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 '사무분담' (2014. 12. 17.자 게시글)

[게시글 일부]

"**지원에서의 사무분담**시즌은 **미니정치판을 뛰어넘어 동물의 왕국 수준**의 스펙타클함을 보여주는 듯. 강한 자가 살아남는건지 살아남는자가 강한건지..."

[댓글 19개] ⇨ 대부분 지원 사무분담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3. 대처 방안

가. 대처 필요성

▣ **언론 등으로부터의 비판 소지 사전 차단**

- 최근 이○○ 부장판사의 인터넷 댓글 사건으로 **법관의 인터넷상의 표현 행위**에 대하여 **언론 등 국민의 관심 집중**되어 있는 상황
- 법관이 회원인 **인터넷 카페의 존재 자체가 알려질 경우**, 그 게시 글 내용 등에 대하여 **언론의 집요한 취재 예상** ⇨ 언론 등에 **게시글 내용**이 알려지는 것은 시간 문제

∴ **회원 가족**이나 **지인**인 **기자, 검사 등**에 **의해** 카페 게시글 내용 등이 외부

로 **유출될 가능성** 상존

-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확보하면** 언제든 카페에 로그인하여 모든 **카페 내 정보 취득 가능**

● 부적절한 표현 등이 발견될 경우, 해당 카페 회원 법관들의 피해는 물론 **사법부 전체**의 **이미지**에 **큰 손상 발생 우려** ⇨ 카페의 존재 사실 자체가 언론 등에 노출되기 전 **선제적 신속 대응 필요**

▣ **사법부 현안 등에 관한 잘못된 정보 확산 억지**

● **사법부 관련 민감한 이슈**에 관하여 지극히 **주관적이고 논리 박약한 의견 난무** ⇨ 300여명의 회원 법관들이 상시 접근할 수 있어 **오도된 주장이 마치 사실인 것으로** 법관들 사이에 **공감대 형성**될 **위험**성 존재

● 특히 **상고법원 설치** 관련하여 카페 내 게시글과 같은 **부정적 의견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법관 사회에서조차 반대하는 정책이라는 뼈아픈 비판에 직면** ⇨ 관련 **법안 심사에** 매우 **부정적 영향 미치는 결정타**가 될 수 있음

나. 구체적 대처 방안

▣ **[자발적 조치] 카페 폐쇄 등 유도**

● 1 최근 법관의 인터넷 표현행위에 대한 **사회의 우려 분위기 간접적으로 전달**

- 일선 법원장들을 통해 **전국 법원에** 이○○ 부장판사 사태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권고하면서, 간접적으로 **사이버공간에서의 부적절한 의사표현 활동에 대한 자제 필요성 강조**

- 이미 **카페 내 댓글을 통해서도** 회원인 **일부 법관들이 카페 활동에 대하여 걱정하는 분위기 감지**

☑ '외부유출시 문제의 소지가 큰 게시글에 대한 운영진의 관리기준을 요청

합니다’ (2015. 1. 31.자 게시글)

[게시글 일부]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외부 유출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운영진에서 일응의 기준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편집해서 오용당하면 큰 사태가 날 수도 있는 위험이 다분하지 않을지요”**

[일부 댓글]

“어렵고도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가족이 언론사에 계신 분들이 많아 해킹이 아니라도 유출의 위험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판사의 양심은 믿지만 **아이디 도용과 해킹의 사례도 많은 것은 유념해야 할 듯 합니다**”

“언론에 유출되면 즉시 폐쇄가 좋을 듯 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보다는 이번 기회에 전체 의견을 조회해 보고, 나름의 대안을 마련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2 회원으로 가장하여 카페 내 활동 중단에 대한 글 게시

- 현재 로그인 가능한 **아이디, 비밀번호 확보**한 상태
- 이○○ 부장판사 사태 등을 강조하며 직접 카페 활동 자제 관련 게시글을 올려 카페 폐쇄 분위기 확산

● 3 운영자의 자진 카페 폐쇄 유도

- **소속 법원장**이나 **믿을 만한 선배 여성 법관 등**을 **통해 홍○○ 판사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우려 의사 전달**
  - **홍 판사를 운영자로 인식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지 않고, 원론적 의견 피력** 방식이 바람직
- 다만, **홍 판사**의 **평소 성향상** 카페 폐쇄 조치 등을 쉽게 **수긍할 가능성 높지 않음** ⇨ 오히려 반발심 유발로 상황 악화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고 유연한 접근 필요**
  - 1차적으로 최근 법관의 인터넷상의 표현행위에 대한 외부의 시각과 카페 활동에 대한 소문 등을 언급하면서 **반응 체크**
  - 카페 활동의 역효과 등 고민의 흔적 엿보이는 경우, 부적절한 의사 표현 활

동이라는 의사 넌지시 전달

■ 표현의 자유 등 운운하며 강경하게 발언할 경우, 일단 더 이상의 설득 중지

▣ [강제적 조치] 법관윤리강령 등 위반에 따른 조치

● 근거 규정 등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법관윤리강령
제2조(품위 유지) 법관은 명예를 존중하고 품위를 유지한다.
제3조(공정성 및 청렴성)
① 법관은 공평무사하고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제3호 [구체적 사건에 관한 법관의 공개적 논평이나 의견표명시 유의할 사항]

법관은 의견을 표명할 때 품위를 유지하고, 공정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않도록 유의하며, 다른 법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삼가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또한, 법관은 교육이나 학술 또는 정확한 보도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공개적으로 논평하거나 의견을 표명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합니다.
자유로운 의견 표명과 비판은 보편타당한 법 논리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관이 이미 확정된 사건에 관한 비평이나 개인적 견해를 밝히는 것이 금지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법관이라는 직책의 특별한 무게를 고려할 때 현재 진행 중이거나 곧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에 관하여 법관이 법정 밖에서 공개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습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제5호 [법관이 단체활동을 할 때 유의할 사항]

첫째, 법관은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단체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법관의 단체 활동의 자유보다는 맡은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법관으로서의 의무가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법관은 정치적이거나, 법관의 독립성, 공정성 또는 청렴성을 해할 수 있는 단체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나아가 법관은 단체 활동을 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활동으로 비칠 수 있는 외관이나 상황을 만들어서도 아니 됩니다. 법관이 단체 활동을 하면서 대중적 논쟁에 참여하는 것 또한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셋째, 법관은 단체의 구성이나 운영이 외부적으로 잘 드러나지 아니하거나, 단체에서 구성원들

간의 내부적 친밀 관계로 서로 특별한 혜택을 주고받을 것으로 비칠 수 있는 단체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그런 활동은 자칫 법관의 품위와 관련된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일반 국민으로부터도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법관은 재판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는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운영자금을 제공받는 등 재정이 투명하지 않거나 의심스러운 단체에서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제7호 [법관이 SNS를 사용할 때 유의할 사항]

첫째, 법관은 SNS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사용법을 숙지함으로써 SNS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관은 자신의 SNS 상에서 신상정보와 게시물의 공개범위 설정 및 타인이 자신의 SNS 상에 남긴 게시물 관리에 신중해야 합니다.

둘째, 법관은 SNS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법관윤리강령을 준수하여 품위를 유지하고, 법관으로서의 공정성과 청렴성이 의심받지 않도록 해야 하며, 편견이나 차별을 드러내거나 그러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셋째, 법관은 SNS 상에서 변호사 등 소송관계인이 될 수 있는 사람과 교류할 때에는 법관으로서의 공정성에 의심을 일으킬 외관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법관으로서의 공정성에 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라면 더 이상의 교류를 중단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넷째, SNS의 공개적 성격으로 인하여, 법관은 SNS 상에서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논평하거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제한되고,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타인에게 법률적 조언을 하거나 법조인에 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해서도 안 됩니다.

다섯째, 법관은 SNS 상에서 사회적·정치적 쟁점에 대하여 의견 표명을 하는 경우에도 자기절제와 균형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품위를 유지해야 하고, 법관이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놓이게 되거나 향후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야기할 수 있는 외관을 만들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신해야 합니다.

- 법관윤리강령,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위반 여부
  - 법관윤리강령 제2조의 품위유지의무, 제3조 제1항의 공정성 의심받을 행위 금지의무 위반 검토 가능 ⇨ 포괄적 성격의 위 규정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에 의해 구체화됨**
  - **[권고의견 제3호 위반 여부]**
    - 의사표명의 **'공개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위반 여부 단정하기 어려움**

⇨ ∵ 카페는 개설 당시부터 엄격한 법관 회원제를 바탕으로 **외부에 대한 비공지를 전제로 의사표현 활동**을 개진하고 있음

- [권고의견 제5호 위반 여부]
  - 우리법연구회를 타겟으로 마련된 권고의견
  - 인터넷 카페 활동을 **사이버공간에서의 단체 활동으로 해석**하여 의율 가능
  - 다만, 의사표현 활동만을 목적으로 한 인터넷 카페 구성을 부적절한 단체 활동으로 볼 경우,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반론 제기될 수 있음**
- [권고의견 제7호 위반 여부]
  - 커뮤니티 성격을 갖는 인터넷 카페를 불특정 정보 전파성을 특징으로 하는 SNS의 일종으로 보기는 어려움
  - 다만, **의사소통의 즉각성, 회원의 내부 규율 위반에 따른 정보 전파 가능성** 등을 이유로 **권고의견 제7호의 유추적용**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가능한 조치

- 설령, 법관윤리강령 등의 위반을 인정하더라도, 그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등에 비추어 징계에 회부할만한 사항은 아님 ⇨ 자칫 공식 징계절차로 나아갈 경우, 법관 사회의 반발 야기될 수 있음
- 자발적인 카페 폐쇄 조치가 여의치 않을 경우, <u>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제5호, 제7호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최후의 **설득 및 엄포용 카드**로 활용</u>